



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

총동문회 회칙

시행일: 2025 년 4 월 1 일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명칭) 본 회는 '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'라 한다.

제 2 조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,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소재)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, 시도와 주요 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 2 장 회원

제 4 조(회원의 구분)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제 5 조(회원의 자격)

1. 정회원은 국제경영전문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명예졸업한 자로 한다.
2. 준회원은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 퇴학한 자, 단기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, 고위경영자과정 및 본 회가 인정한 공개강좌 과정을 수료하고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.
3. 특별회원은 전·현직 전임교원으로 한다.

4. 명예회원은 모교 및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분으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5. 재학생과 졸업생의 부모는 부모회원으로 하며, 명예회원에 준하여 예우한다.
6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.
 - 1) 회원 간 친목 또는 모교 발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자
 - 2) 본 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
 - 3) 반사회적 행위로 본 회 및 모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

제 5 조의 2(정회원의 자격 및 유지 요건)

정회원은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생 중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
입학과 동시에 준회원으로 등록되며, 졸업 후 회비 납부 시 정회원으로 자동 전환된다.

정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연속 연단위 회비 납부가 필요하다.

제 6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1. 정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 의무가 있다.
2. 준회원·특별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상임위원회의 인준이 있어야 부여된다.
3. 명예회원은 회의 참석 및 의견 진술 가능하며,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 의무가 있다.

제 6 조의 2(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 세부 사항)

- ① 총동문회 행사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우선 참여권이 있으며, 복지 혜택과 상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② 회비를 6 개월 이상 미납 시 자격이 정지되며, 완납 시 복구된다.
- ③ 총동문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규율 위반 시, 운영위원회 의결로 자격 박탈 가능하다.

제 3 장 임원

제 7 조(임원 및 임기)

본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, 당연직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.

회장은 1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, 다른 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.

제 7 조의 2(임원 구성 세부 사항)

회장, 사무총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단, 국장단(재무, 홍보, 복지 등)으로 구성된다.

회장 임기 2 년, 최대 1 회 연임 가능. 국장단·부회장은 회장 제청과 운영위원회 동의를 통해 연임 가능.

회장 연임은 총 3 년까지 가능하다.

제 8 조(임원의 선임)

회장은 정회원 100 인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하며,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회원 투표로 과반수 득표 시 선출된다.

선출 후 30 일 이내 부회장 및 국장단 구성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 9 조~제 10 조(기타 임원의 직무)

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유고시 수석부회장 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운영을 감사한다.

제 10 조의 2(명예회원 및 고문제도 보완)

명예회원은 교수진, 주요 기부자, 전임 회장 등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.

공식 행사에 초청되며 자문 역할을 한다.

제 4 장 회의와 기관

제 11 조~제 14 조: 총회, 상임위원회, 사무처,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소집 방법은 기존 회칙과 동일하게 유지한다.

제 5 장 재무 및 복지

제 15 조(재정)

본 회의 재정은 회비, 분담금, 기부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 15 조의 2(회비 및 기부금의 종류와 징수 방식)

- 월 회비: 2 만원 (CMS 자동이체)

- 평생회원제: 10 년(240 만원)
- 기부금: 지정 목적에 따라 접수 및 관리
- ※ 모든 회비는 총동문회 공식 CMS 계좌로 납부

제 15 조의 3(예산 집행 및 재무 보고)

- 500 만원 이하: 재무국장·회장 승인
- 1 천만원 이하: 운영위원회 과반수 동의
- 1 천만원 초과: 총회 의결 필요
- ※ 재무 보고는 분기별, 연간, 행사별로 공개함

제 15 조의 4(회계 감사)

- 연 1 회 외부 감사(공인회계사 등) 가능
- 감사 결과는 정회원에 공유

제 16 조(회계연도)

1 월 1 일~12 월 31 일. 예산 미편성 시 전년도 예산으로 경상비 집행 가능

제 17 조(경조금 및 복지 정책)

회원 및 직계 가족 경조사 시 경조금 및 기념품, 조기 등 제공

- 결혼, 사망 항목별 차등 지급
- 동문 복지: 제휴업체 할인, 건강검진, 문화활동 등
- 활동회원에 활동비 지급 또는 회비 감면 가능

제 17 조의 2(동호회 및 소모임 지원)

- 재학생/졸업생 동호회에 연간 운영비 지원
- 공식 행사 참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
- 신규 소모임은 일정 실적 검토 후 정식 승인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2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